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2
------------	------

발의연월일 : 2017. 7. 20.

발의자 : 노웅래 · 장정숙 · 김영호

서형수 · 서영교 · 최명길

유동수 · 김정우 · 신창현

박선숙 · 안규백 · 박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세 미만에게 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나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위급상황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음.

그런데 보건교사가 이와 같은 위급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하여 해당 학생이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서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사등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미리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보건교사등이 제5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p>	<p>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5 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미리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u>⑥ 보건교사등이 제5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 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u></p>
<p><u><신 설></u></p>	

<신 설>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제1형 당뇨 또
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
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